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75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 송석준 · 곽규택 · 이종배

박정하 · 김예지 · 고동진

이헌승 · 김선교 · 장동혁

김성원 • 유상범 • 윤상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 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래지원"이란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 용역의 제공 등 행위를 말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준수의무)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하려는 경우 해 당 가상자산의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거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거래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
 - 2. 가상자산 거래 유의종목 지정
 - 3.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 제2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적합성을 심사하지 아 니하고 거래지원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준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한 가상자산사업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거래지원" 이란 이용자가
	<u>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u>
	<u> 상자산의 매매 또는 그 밖의</u>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자
	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 용역의 제공 등 행위를
	<u>말한다.</u>
<u><신 설></u>	제9조의2(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준수의무)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
	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하려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가상자
	산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거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래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저 검사 등)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 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3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u></u>	<u>한다.</u>
1	.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
2	. 가상자산 거래 유의종목 지
	<u>정</u>
<u>3</u>	.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4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가상
	자산의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
	요 의사결정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u> </u>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 요
<u>7</u>	<u> </u>
7	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7	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2)
-	
_	
_	
_	
_	
_	
1	. ~ 4. (현행과 같음)
4	의2.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③ ~ ⑤ (생 략)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2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8. (생략)

②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u>-</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가상자산의 적합성을 심사 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원을 한 <u>자</u>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